

30초만 생각하면 청렴한 세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청탁 하기전 잠깐!
금품 받기전 잠깐!
딱! 30초

청탁금지

법이 연고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청탁금지법'이 만들어 갑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 부정청탁 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2.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 시 관련자 제재
- 기문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제금 제한

3.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

-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산별보호 등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모상금 지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년 9월 28일

생활에 유익한 법률 상담소

201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457-06

2018년 7월 (제309호)

생활에 유익한

법 무 상 식



법령정보 이용안내

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law.go.kr>
- 도·시군 및 타시도 자치법규
• <http://www.elis.go.kr>
- 공기업·출연기관 규정관리시스템
• http://211.39.94.161:8088/law_rule

이용가능한 법률정보

- 법제처 (www.moleg.go.kr)
최근제·개정법령, 입법예고사항, 판례속보
- 대법원 (www.scourt.go.kr)
사건검색, 최근개정 법령, 판례속보
- 넷로 (www.netlaw.co.kr)
판례를 대법원, 하급심, 헌법재판소로 구분 제공
- 대한민국법률정보 (www.lawkorea.com)
입법예고, 법률만화 등
-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law.jeonnam.go.kr)
법무행정정보,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등
- 법누리 (yeslaw) : 입법예고, 법률뉴스 등
-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특허청, 국회도서관, 노동부 등

자치법규 접속방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
• 전라남도청 → 정보공개 → 법무행정서비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클릭
- 전라남도 행정포탈을 통한 접속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 클릭

도정방침

-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
1. 활력있는 일자리 경제
 1. 오감만족 문화관광
 1. 살고 싶은 농산어촌
 1. 감동주는 맞춤형복지
 1. 소통하는 혁신도정

독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제·개정되는 새 법령과 자치법규를 도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월 법무상식지를 편집 발간·배부하고 있습니다.

「법무상식」지는

독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설계하고 통합하여 개개인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선해야 할 사항 및 개인별 법률체험사례 등 법무상식지를 알차게 꾸밀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유익하고 충실한 「법무상식」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상식

- 편집에 참여한 사람들
 - 법무통계담당관 박화현
 - 법 제 팀 장 채희섭
김양현, 조신웅, 최지선, 채길병, 위영초
- 보내실 곳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TEL : (061)286-2623 FAX : (061)286-4740 · (행)2623



2018년 7월 통권 제309호

새로운 판례	2
법령해석사례(법제처)	22
행정심판 재결사례	52
생활법률 상담사례	67
법무단신	80
시행법령	101
솔로몬의 재판	108



- ◆ 명의신탁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경감되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616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권하였는데, B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가 분양대금을 빌려주어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가 원고로부터 빌린 분양대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구두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수년이 흘러 원고가 B의 요구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관련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B가 취득할 당시 그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에 있어 어떠한 법령상 제한도 없었다. 따라서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가 등기된 것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8. 10.경 B로부터 다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당시의 취득세영수증과 이 사건 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였다는 확인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B에게 분양대금을 실제로 빌려주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 사정, 기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대금채권의 소멸 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 대구고등법원 2017나23241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충전기 대금 청구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피고가 J에게 이 사건 충전기의 제작공급을 발주한 2014년 5월 7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 J가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2017년 11월 21일 당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충전기 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2010다56685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J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충전기 제작 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충전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제작완료일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갑 제16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년 1월 11일 J에게 이 사건 충전기의 펌웨어를 수정해야 한다며 무선충전기 4개를 K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6년 1월 12일 K에 무선충전기 4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충전기 5,000개의 제작이 완료된 시기는 2016년 1월 12일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J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이 사건 충전기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6년 1월 12일경 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기 전에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양수금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위법하게 수집된 CD 및 현장사진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 제주지방법원 2017노112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의 공연을 촬영한 영상 및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이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의 무대에서 한 공연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촬영의 경위 및 수사의 성격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을 비롯한 제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의 공연을 촬영한 후, 그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는, 수사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피고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들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나. 영장주의와의 관계

1) CD 및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을 비롯한 제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나이트 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가 강제수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증인 ○○○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에 기재된 피고인 ○○○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 및 증인 ○○○, △△△, □□□의 당심 법정 진술 중 피고인 ○○○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CD 및 현장사진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1차적 증거인 CD 및 현장사진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D 및 현장사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들이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을 토대로 피고인 ○○○의 구체적인 공연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증인 ○○○, ○○○, △△△, □□□의 각 법정 증언 중 피고인 ○○○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도 모두 증인들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년이 더 경과한 시점에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에 기초한 질문자들의 각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

- 3) 의견서, 범죄인지,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결과보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통보 중 피고인 ○○○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 각 증거도 모두 CD 및 현장사진으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그 인과 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7도4027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부동산 이중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를 유지하고,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 사례.

-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라고 하려면 타인에게 귀속되는 사무로서 사무의 주체가 타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무 자체의 내용이나 신뢰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이 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각자의 ‘자기의 사무’일 뿐이어서 부동산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이 있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7도9146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2.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이 신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방송차량을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고,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차로에서 머물다가 귀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도로점거행위가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볼 수 있고,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의 의미

* 대법원 2014두1178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이 사건 단층 건물이 여러 의료기관이 위치한 이 사건 4층 건물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거부 사유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의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 2015다4167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 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이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한 때,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용지가 된 경우, 그 토지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목적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공공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 제12조, 제15조에 따르면,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으로 간주되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유상으로 매수한 토지는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도로를 설치한 부지인데, 원심은 이를 현황 도로로 보았으나,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그에 따라 설치한 도로는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공공시설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 살처분명령을 한 사안에 대하여 위 살처분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739

1.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처분의 대상이 된 ○○○농장은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가축전염병 제20조 제1항 단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보호지역”에 위치한 원고의 농장에 대하여 한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발병 농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오염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도 등을 감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농장이 기존 면적보다 넓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친환경인증 및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이므로 보호지역의 다른 농장보다 AI 발병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I는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하여 발병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육형태와 같은 농장의 경우에만 AI 발병가능성 등이 현저하게 낮아 보호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그 예방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부터 AI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2016년 11월 16일 최초로 AI가 이후 10개 시·도 47개 시·군에서 353건의 AI가 발생하였고, 850개 농장에서 약 3,398만 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되었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AI 최초발병 농장에서는 2017년 2월 26일 약 8개 동에서 각 8~10마리가 폐사하였고, 2017년 2월 27일 오전에는 1,280마리가 폐사하였다. 이후 2017년 3월 5일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0.55km 떨어진 이○○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최초 발병농가로부터 1.3km 떨어진 B가 운영하는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AI의 확산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AI는 주로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계사 내의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된 물·사료 등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으며, 인접한 농가 사이에서는 바람을 통한 전염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살처분은 감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바이러스의 배출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효과는 확실한 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AI의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피고는 오염지역(500m이내), 위험지역(500m~3km), 예찰지역(3km~10km)으로 나누어 오염지역, 위험지역 내에 있는 농장에 한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예찰지역에 있는 25농가 88만 9,000마리에 대하여는 주1회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하는 것으로 방역대책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AI는 전파가능성이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폐사율도 굉장히 높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농장의 산란계들이 실제 AI에 걸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최초발병 농장 주위의 사육현황, 최초발병원인, 최초발병시기,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 제3자가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피고가 수리한 경우, 그 수리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대법원 2018두33593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참조).

☞ 원고가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에 관하여 제3자가 원고 명의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한 사안에서, 위조된 신고서에 의한 위 폐지신고 및 폐업신고는 효력이 없고 피고의 신고 수리행위 역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신고행위의 유·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당연무효가 된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적 언사를 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하여 내려진 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989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다룬다.

2.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② 원고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교육을 업으로 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어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년 5월 24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언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원고가 교사로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사례 1

국토교통부 -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 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제3조 제2항) 있는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는 사업 시행 일련의 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므로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에 관해서 도시재정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완료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목적 달성으로 인한 지정 해제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인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 후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제83조제1항 및 제3항), 정비구역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정이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므로(제84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도시정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완화된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 받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여 관리한다면 정비계획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정비된 건축물 등이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경우 준공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사례 2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인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로 한정되는지?
-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환자의 미성년 자녀가 작성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한지?

● 회 답

- 가. 이 사안의 경우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인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로 한정됩니다.
- 나. 이 사안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0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응급의료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함)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의 대지급(代支給)을 청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의료기관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는 응급의료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취지에 따라 대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응급의료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입법 취지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등이 응급의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일부개정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응급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불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그 진료비를 의료기관등에 지급하되 사후적으로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함)로부터 대신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는 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3자를 통해 확인하는 서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후 상환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求償)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므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보호자는 미수금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응급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대지급금을 갚아야 하는 상환의무자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환자 또는 보호자”로 규정하여 법률상 미수금 상환의무자와 일치하지 않은바,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응급의료법 제22조에서는 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불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그 진료비를 의료기관등에 지급하되 사후적으로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신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의료기관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는 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3자를 통해 확인하는 서류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후 상환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갚을 것을 청구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성년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대지급금 상환을 위한 채무 부담과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가 환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민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사례 3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해 처리된 자료의 이용 승인 요청을 받지 않아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및 정비내역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함)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산자료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에서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이하 “운행정지 자동차”라 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 등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국회 검토보고서[2014. 6. 19. 의안번호 제1910915호로 발의되어 대안반영 폐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 발의)] 참조)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기록과 정비내역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 운행자의 처벌(같은 법 제82조제2호의 2)을 촉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0조제2항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승인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3항에서는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자료가 제공된다면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 내려질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고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법제처 2017. 12. 12. 회신 17-0513 해석례 참조), 오히려 그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을 효율적으로 방지·단속하는 것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로서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의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상항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4

민원인 -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관련)

● 질의요지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 이 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서는 다중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주차장과 같이 주거의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층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나목) 등의 용도를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1호다목1)에서는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본문),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단서),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3)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과 달리 주택 층수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규정들의 문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건축물 내 주차장은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종속되어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단독주택 내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제처 2017. 3. 31. 회신 17-0041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 단서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중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는 주차장과 같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포함되고, 비록 해당 층의 일부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는 한편,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여 1개 층을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를 효율적

으로 활용하고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2007. 2. 28. 대통령령 제19920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다가구주택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특례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법령해석에 의해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5

민원인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당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받았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등을 통해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그 상속인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습니다.

● 이 유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을 하여 해당 산지에 대해 복구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속인은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도 승계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대해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이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산지 임차인의 상속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 소유자로부터 산지를 임차한 사람이 산지의 점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이 사안의 사망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해당 산지의 점유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상속인은 점유자인 사망한 임차인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서는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안의 상속인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법전용된 산지의 복구가 산지 점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그 복구의무를 승계시켜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사례 6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산물 및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목이 전(田)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1)에 따른 창고를 건축하고 그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한 경우

가. 해당 창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해당 창고 건축을 위한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 사업”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 회 답

가. 이 사안의 창고는 창고시설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안의 창고 건축을 위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서는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창고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창고”를 “물품저장시설(「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물품”이란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저장”이란 물건이나 재화 따위를 모아서 간수하는 것을 각각 의미하므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안의 농산물 및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에 따른 창고시설의 하나인 “창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축사 등 동물 관련 시설을,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작물 재배사 등 식물 관련 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창고가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작물 재배사(마목), 종묘 배양시설(바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사목),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아목)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 할 것인데, 이들 시설은 식물을 키우고 “자라나도록 하는 시설”이므로 농작물 등의 “보관 창고”는 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가축용 창고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호 나목) 농작물 창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창고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 구역법”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제1조)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정하여(제1조) 그 규율대상을 달리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의미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이 사안의 창고를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해석 하면서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시설 명칭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7호, 이하 “건축물 지목변경사업”이라 함)과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제8호가목, 이하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이라 함)을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지목변경사업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 변경되었다면 그 건축시에 실제로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례 참조)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은 창고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두 개발사업은 서로 사업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지목변경사업은 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나 “창고시설”은 제외되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별표 2) 반면,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에는 그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에 한정되어

두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지목변경사업은 창고시설을 제외한 일정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은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창고로 사용될 토지에 대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된 경우를 말하고, 이 사안은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이므로 건축물 지목변경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창고 건축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창고 건축과 그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절토·성토 등의 부지조성과정을 거쳐 해당 창고를 건축했다면 그 창고 건축 과정에서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의 시행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 7

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한 세대의 벽면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창문이 있는 벽면이 같은 방향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이 적용됩니다.

● 이 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주보는 건축물 간 띄어야 할 최소한의 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 등 채광과 관련 있는 벽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건축물 간 이격 거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령에서는 “벽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벽면”을 판단할 때 마주보는 면에 위치한 벽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마주보는 세대의 벽면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채광·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이익(日照利益)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 비추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5. 25. 회신 12-0257 해석례 참조) 그 적용기준은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이하 “인동간격”이라 함)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단서)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세대”에 일정 기준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가목을 적용할 때 인동간격의 기준점이 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도 마주보는 건축물에 있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의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마주보는 벽면이 속한 세대”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같은 방향으로 창문이 있는 벽면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동간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그 건축물에 위치한 모든 세대의 일조권을 일정 수준으로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창문이 없는 벽면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벽면이 속한 “각 세대”가 아니라 마주보는 “벽면”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경우 인동간격을 줄이기 위해 맞은 편 건축물과 마주보는 벽면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일조권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8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에 따른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에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이 포함되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에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균”이란 여러 수나 같은 종류의 양의 고른 값을 의미하고, “잔액”이란 금액이나 물품에서 일정한 액수나 양을 뺀 나머지를

의미하는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제1호가목에서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이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한 기간 동안 “입출금된 금액 차이의 합을 평균한 값”을 말하는 것이고 “3개월간 입금액 또는 출금액 전부를 합산한 총액”은 문언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나목에서는 금융정보의 한 종류로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과 다르게 “총납입액”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체계를 보더라도 같은 호 가목의 “평균 잔액”의 의미에는 금액의 누적치인 “입금액 또는 출금액의 총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의 특성상 입출금이 발생할 때마다 잔액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최근 3개월간 평균 잔액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수급권자 등의 소득·재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수급권자의 자산 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입법 취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조회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0호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급여 결정 이후에도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에게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급여 여부 및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수급권자 등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오용·남용을 제한하려는 취지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0호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요구불예금에 관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요구불예금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수급권자 등의 실제 자산을 파악하는 데에 더 용이하다는 추측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급권자 등에 대한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9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거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구조규칙”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에 관한 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정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재료나 두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화구조 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함)이 내화구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일정한 재료 및 두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그러한 재료나 두께가 아닌 다양한 재료나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구조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검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보려는 취지이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또는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만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조)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에서 내화구조에 적합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례 10

민원인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 답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유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 시설(제11호)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 하면서 같은 별표 제3호사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11호가목에서는 노유자시설의 하나로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로 국공립어린이집(제1호), 가정어린이집(제5호)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이하 “민간어린이집”이라 함)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과 노유자시설(제11호)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아동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만 규정(제3호사목)하고 있는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지역아동센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법제처 2016. 5. 18. 회신 16-0092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단독주택(제1호)으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제2호)으로, 그 외의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제11호)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에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같은 별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에서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3호사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 중복되지 않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1호가목에서 노유자시설의 하나인 아동 관련 시설로서 어린이집 등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가정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1

【2017-217,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과징금(2천만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16.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관리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2천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폐기물중간처분업자(소각전문)인데, 청구인이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를 청구의 (주)○○○○(○○소재, 폐기물최종처분업)으로 운반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청구의 (유)○○환경(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건설폐기물 보관장에 운반한 사실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2017. 9. 14.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16.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2천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던 청구인의 현장담당직원이 고철 등을 선별하겠다는 생각으로 약 30여 톤을 적정 처분할 수 없는 장소로 운반하였으나,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이후 같은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문제되는 폐기물을 전량 적정·처분할 수 있는 장소로 운송시켰으며, 본 건이 청구인의 담당직원의 실수로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청구인이 곧바로 폐기물 전량을 회수한 점,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 향후 본 건과 같은 위반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인 점, 지역 인재육성 및 체육발전을 위해 ○○장학회 장학금 지원, 소각로 폐열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난방에 따른 유류비(년간 약 2억5천만원)을 절감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 2,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나. 피청구인

-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처리를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됨에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 약 30여 톤(15톤 2대분)을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장소로 운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원 처분에 해당된다.
- 2)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치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 당시 청구인은 11개의 현장과 계약 중에 있어, 청구인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 현장의 폐기물 적체가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였다.

-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1/2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되어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여부는 행정청인 ○○군의 재량권으로, 청구인이 감경대상이라고 주장하는 6가지 사유(초범, 사회에 공헌하는 등)와 본 건 이외 다른 위법 행위(건설폐기물 재위탁 등)와 2건의 수사기관 조사 등에 검토하여 볼 때,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 2,000만원 부과”가 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8조
-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제11조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소각하기 위한 폐기물중간 처분업(소각전문)을 영위하는 자이다

- 2) 청구인은 2017. 4. 28. 청구인 운영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 약 2대분(30톤)을 청구외 (유)○○환경 건설폐기물 보관장에 반입한 사실(이하 ‘이 사건 반입행위’라 한다)이 있다.
-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반입행위에 대해 법 제13조, 제27조, 영 제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 5. 29.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위반사항은 인정하면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처분을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영 제1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 8. 16.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청구인은 이 사건 반입행위는 의도적이 아니며, 문제되는 폐기물을 전량 적정 처분할 수 있는 장소로 운송시켰다는 등의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재량권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살피건대,
- 2) 비례의 원칙이란 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8조

-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营业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 제11조 제1항, [별표6]은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고, 영 제11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살피건대, 영 제11조 제2항은 법 위반자에 대한 가중·감경 여부에 대해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법 제13조 제1항 및 영 제7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면서, 다만, 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목),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나목)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을 제한하는 것은 원래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수집 후 즉시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수집·운반업자의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임시보관 장소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주어진 법 제13조, 영 제7조 제1항 제3호의 의무가 과도한 부담도 아니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를 폐기물최종처분업자에게 운반하지 않고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보관장에 반입한 것이다(이 사건 반입행위). 이러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폐기물관리법의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서 과한 과징금 액수는 공익상의 필요에 기한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그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성을 가진 것이라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개인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 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례 2

【2017-289,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45일) 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12. 15. 청구인에게 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 45일 처분은 이를 업무정지 3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15. 청구인에게 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 45일 처분은 이를 취소(감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한 사실로, 2017. 1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①청구인은 단 한 차례도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고, ②이 사건 중개 행위로 당사자 간에 분쟁이나 피해가 없었으며, ③피청구인의 지도·점검 후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공익적 측면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며, 2017. 12.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15. 청구인에게 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 45일(2017. 12. 18. ~ 2018. 1. 31.) 처분은 이를 취소(감경)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9. 7. 2. 시행, 법률 제9596호, 2009.4.1., 일부개정) 제25조에서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하는 규정을 “서명 및 날인”으로 명확히 한 개정이유는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법률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인 “서명 및 날인”의 의미에 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등 제반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공하였으며, 단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등록인장만을 날인하고 단순 착오에 의해 서명을 누락하였던 것인바, ①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고, ②이 사건 처분으로 신뢰도 하락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③특히 청구인이 직접 중개를 한 후 계약서의 교부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지도·점검 후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중개대상물의 모든 서류에 청구인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 및 연락처와 주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은 2017. 10. 18.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2017년 하반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차 중개가 완성된 거래계약서를 확인하던 중, ○○시 ○○면 ○○리 부동산 전세계약과 관련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

하였던바,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0호에서는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3월”로 규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11. 30.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후, 청구인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서명을 단순 착오로 누락한 것을 인정하고 업무정지를 감경하여 주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을 제출하므로,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3월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9조
-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2] 제8호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7. 3. 21.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2017. 3. 21. ~ 2018. 3. 20., 금일역원 한도)을 체결하고, ○○시 ○○면 ○○
○○로 소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 중개

- 사무소를 개설·등록하였다.
- 2) 청구인은 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7. 8. 10. ○○시 ○○면 ○○리 소재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개’라고 한다)하였다.
 - 3) 피청구인은 2017. 10. 18.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중개 대상물 : ○○시 ○○면 ○○리 ○○-○○번지 ○○○○○ ○○○동 ○○○호
 - 계약일 및 거래당사자 : 2017. 8. 10.(임대인 : 이○○, 임차인 : 김○○)
 - 처분원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 4)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서명 및 날인”란에는 청구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인장만 날인되었을 뿐, 청구인의 서명은 누락되어 있다.
 - 5) 피청구인은 2017. 11. 3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7. 12. 11. 처분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단순 착오로 위법행위가 있었는바, 업무정지 3월 처분은 너무 과중하므로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였다.
 - 6) 피청구인은 2017. 12. 13.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감경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7) 청구인은 2017. 12.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본 위원회는 같은 달 19일 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다.

- 8) 이 사건 부동산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탄원서를 청구인을 통해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이용제한사항과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확인,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한 사항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제8호에서는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본문은 업무정지의 기준에 관해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서명 및 날인”의 해석에 대한 판례의 입장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2655(2008. 3. 12.) 판례¹⁾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어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서명 및

1) 2007. 6. 29. 이전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관계법령에는 서명·날인으로 규정된 것이 이후 2009. 4. 1. 개정되어 “서명 및 날인”으로 변경됨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의 규정 형식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2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 민법 제510조, 어음법 제13조 등)에도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은 ‘서명·날인’으로 규정하여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여러 단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데점(·)을 사용한 점,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중개한 거래계약의 내용 및 중개를 한 중개업자를 명확히 하여 돕으로써 중개와 관련하여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만일 중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개계약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의 ‘서명·날인’의 의미는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반면, 서울고등법원 2008누9005(2008. 8. 26.) 판례는 “①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호는 중개업자가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이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로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와 아예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그 중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만을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바, 이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9호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따로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위와 같은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의 규정들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이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문장부호인 가운데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2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범죄인인도법 제19조 제3항 등과 같이 ‘서명·날인’이 ‘서명 및 날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같이 ‘및’의 의미로 가운데점을 사용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 소정의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 모두 하여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9호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에 정한 거래계약서에의 서명·날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제3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상고심(대법원 2008두16698)에서도 “서명·날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 3) 부동산중개업법(법률 제6236호, 2000.1.28., 일부개정) 제16조 제2항의 “서명·날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는 “서명·날인”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법령해석(법제처 05-0101, 2005. 12. 28)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개가 완성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때인 2017. 8. 10.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할 것인바,
- 4) 살피건대, ①이 사건 부동산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중개로 인해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경제적 피해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점, ②이 사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청구인의 서명만이 단순 누락되었을 뿐, 청구인 중개사무소의 인장이 날인되었고 중개사무소의 상호 및 연락처와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였던 점, ③청구인은 공제보험에 정상 가입하고, 그 동안 다른 위반 전력 없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성실히 운영해 온 점, ④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커 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고령자 고용/해고 근로자)



저는 53세의 직장인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전보명령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자 및 준고령자가 연령을 이유로 차별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 ☞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고용노동청을 통한 권리 구제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

A

구 분	내 용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에 포함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 피해의 원상회복 •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조치



Q

저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일정한 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고령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A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몇 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경우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노동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① 제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 ②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 ③ 1. 및 2. 외의 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 고용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Q

저희 회사 창고에서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재고정리를 할 직원을 뽑으려 합니다. 일이 힘들다 보니 모집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하고 싶은데 현행 법령 위반인가요?

A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 또는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창고업무와 같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고령자 연령차별금지의 예외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저는 6개월 전에 퇴직한 58세의 남자입니다. 재취업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령자 및 준고령자는 다양한 기관에서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알선 등 지원

☞ 취업알선 등의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업무를 통해 고령자의 구직을 지원함 ① 가능한 한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의 직업 소개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알선 ③ 직업지도 ④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 수집·정리 및 제공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업무를 통해 고령자의 구직을 지원함 ① 고령자에 대한 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②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③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교육 및 지도 ④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⑤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고령자 인재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로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지원 ① 고령자에 대한 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②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④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의 지원 ① 고령자에 대한 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②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③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지원 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A

구 분	내 용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업무를 통해 고령자의 구직을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견전문인력의 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②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③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④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의 개발·보급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사람(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사람)을 대상으로 노인일 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분야: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② 민간분야: 시장형, 인력파견형 및 창업모델형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나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인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있습니다.

◆ 통상해고

-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 적격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징계해고

- ☞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 “행태상 사유”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친 경우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가이며,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가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회피 노력, ③ 합리적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 ☞ 통상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 해고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감봉, 견책 등 여러 징계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평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정리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봅니다.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预告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预告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预告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预告

-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预告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预告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预告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고预告 적용 제외 사유

-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预告를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고预告 적용 제외 근로자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预告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①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일용근로자
 -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③ 계절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④ 수습 근로자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한가요?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 해고 사유를 구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재심)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A

- ☞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 소(민사소송)

-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해고무효확인 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 제2심(지방법원법원 합의부, 고등법원)판결에 대한 상고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법무
단신

집회참가자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 섞은 물대포 발사는 위헌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것은 위헌적인 공권력 집행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장모씨 등 2명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법적 근거도 없이 운용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476)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의 압력을 이용해 균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경찰은 현행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도 없이 혼합살수가 가능한 ‘살수차 운용지침’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를 근거로 한 혼합살수 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중·조용호 재판관은 “혼합살수 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한 장씨 등은 경찰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에 캡사이신을 섞어 발포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실제 건축물 축소 입체퍼즐도 저작물로 보호

실제 건축물을 축소해 만든 입체퍼즐도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나 있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프로모션 아이템을 개발하고 교구재를 제조·유통하는 A사가 B사와 정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2762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광화문이나 승례문 등의 건축물 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해 뜯어 접거나 찢는 방법으로 조립할 수 있는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해왔다. 정씨 등은 A사에서 팀장 등으로 일하다 2011년 12월 퇴사 후 B사를 설립한 다음 승례문 등 건축물 축소 모형을 조립할 수 있는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했다. 이에 A사는 “B사와 정씨 등이 판매하는 모형의 전체적인 외형 및 개별 퍼즐조각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우리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며 해당 퍼즐을 판매하지 말 것과 6,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입체퍼즐이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두 회사의 입체퍼즐은 예술성보다는 특별한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서로 간에 유사한 부분은 동일하거나 같은 시대의 유사한 건축양식이 반영된 역사적 건조물을 우드락 퍼즐의 조립이라는 방식적 한계 속에서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도록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능적 저작물의 최종 입체물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으므로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총판계약이 끝난 후에도 A사의 상표를 사용해 판매한 신모씨 등에 게만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사의 광화문 모형은 측면을 줄여 높이를 강조하면서 지붕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실물보다 크게해 과장하고 형상과 모양, 색채도 실물과 달리 표현했다”며 “지붕내부에 별도의 프레임을 넣은 표현 등을 보면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광화문 모형에서 나타나는 창작적인 표현이 B사의 승례문 모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두 회사의 입체퍼즐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도 인정된다”며 “B사 등은 입체퍼즐 제품을 판매하지 말고 폐기하고 A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해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사의 모형이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어음만기 '1년→6개월'로 단축... 2021년부터는 '3개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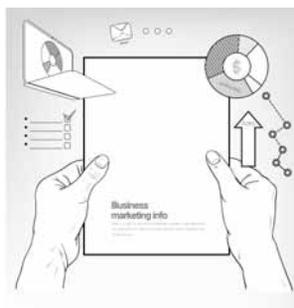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 최장 만기가 6개월로 줄어든다. 최장만기는 단계적으로 단축돼 2021년 5월부터는 3개월로 줄어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30일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축은 30일부터 새롭게 발행되는 전자어음부터 적용되고 이미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몰카·데이트폭력 엄정 대처”... ‘스토킹처벌법 제정’ 추진도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범죄와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와 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데이트폭력은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등의 특징을 고려해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되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 △신고 현장에서 가해자 분리 등을 위한 응급조치·긴급잠정조치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스토킹 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죄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성적 영상물의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영리 목적 유포사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최근 발의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6억9,5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619).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을 기준으로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고,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안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216 비트코인 중 191 비트코인은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씨의 압수된 전자지갑내에 있던 비트코인은 중대범죄로 취득한 것이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호무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한 버스운전사... “과실 없다”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면 버스기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변호인 박용식 법무법인 세계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18).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데, 김씨는 45Km로 주행중이었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김씨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기 직전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도로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를 살펴보면 운전사인 김씨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고려해 감속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아침 출근 시간대 제한속도 범위내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하던 김씨가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보행자를 예견하고 감속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결과론적 가정만으로는 감속조치를 하지 않은 김씨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역버스 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앞 편도 4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45km로 주행중이었다. 이 구간은 커브길이 끝나고 직선도로가 시작되면서 2차로 버스정차구역과 1차로 주행도로가 겹치는 합류지점이었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26)씨는 횡단보도 중간에 있는 교통섬(중앙인도)에 서있다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횡단보도 지점을 통과하던 김씨의 광역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김씨는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운전기사인 김씨가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씨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고용노동부 “회식은 근로시간 포함 안돼... 접대는 회사 승인 있어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문화상 상사가 주재하는 단체회식에 빠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대의 경우에도 일일이 사용자 승인을 받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통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한다”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현행보다 16시간 단축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는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노동부는 자료에서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대기, 교육, 출장, 접대 등의 시간에 대해 관련법과 판례 등을 토대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노동

시간으로 볼 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일선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돼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6다243078)이 근거로 제시됐다.

노동부는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노동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훈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라 노동시간 여부를 판단하지만, 계약이 없다면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노동이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출장의 경우 8시간 등으로 정해지는 ‘소정 근로시간’이나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노동부는 출장과 관련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출장도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의 기준을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회식과 관련해선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회식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정해진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접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 승인’이 있어야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판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워크숍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가능하지만, 워크숍 중 친목 도모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특히 노동부는 다양한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특정 활동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전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창원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7헌가24)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여객자동차법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택시 승객은 운전자와 접촉하는 빈도와 밀도가 높고 야간에도 택시를 이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범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해 개별 운전자의 준법의식 구비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매우 번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명백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적 운전 자격 취소만으로는 입법목적은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라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중 재판관은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를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의장이 법률안 정리 과정에서 3호를 필요적 자격취소로 규정하는 단서 규정을 임의로 추가해 법률안을 정리한 다음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2012년 2월 1일 이를 대통령이 공포했다. 이후 2014년 법 개정 때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3호 부분에 관한 새로운 심의·의결이 없었다”며 “결국 여객자동차법 제87조 1항 3호 부분은 국회의 의결 없이 공포된 법률조항이므로 헌법 제40조, 제53조 1항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같은 반대의견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은 “2014년 여객자동차법 제87조 1항 개정 과정에서 국회 회의록 등에 종전 입법과정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회가 심판대상조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개인택시 운전자인 박모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박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박씨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창원지법은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증도 온라인 시대... 6월 20일부터 '화상공증' 시행

오는 6월 20일부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공증인 사무실을 번거롭게 찾아갈 필요가 없는 '온라인 공증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상공증은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증인을 대면하고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증 의뢰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공증을 받으면 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은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 제도에 따르면 공증인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인증문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 후 공증문서를 등록한다. 의뢰인은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공증 파일을 발급받는다. 화상공증은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녹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화상공증 이용 시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3년 소멸시효내에만 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아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은 혼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8구단527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A씨는 휴직 기간 중인 2014년 11월 전체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미리 신청했지만 9~11월에 해당하는 두 달치 급여만 받았다. A씨는 2015년 9월 복직 후 2년여 뒤인 2017년 10월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강 판사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관계규정의 체계, 조항이 도입된 때의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혼시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2011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때 해당 조항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에서 제외된 점에 주목하며 “국회가 육아휴직 확대에 발맞춰 법을 개정할 때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급여를 주도록 강제하지는 말자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이라며 “이를 단순한 조항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는데 반해 민간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 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14년'만에 다시 대법원 전합 회부...

대법원이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여부를 14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하기로 했다. 8월에 공개변론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한 각계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대법원은 18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2016도10912 등)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8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도 열기로 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100건을 넘는다.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유·무죄 결론이 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는 등 사회적 상황이 변해 여러가지 고려 요소가 많아 대법원이 다시 전원합의체를 통해 신중하게 심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두 사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자 검사가 상고한 사건도 3건이나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병역법과 예비군법상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쟁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철학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12개 단체에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18일 발송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8월 공개변론 이후 2~4개월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최종토론 절차를 걸쳐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허위매물 중고차 판매조직... '범단' 혐의 적용 첫 기소

검찰이 '허위매물'을 미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중고차 매매조직·딜러들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이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이 중고차 사기거래 일당을 '범죄단체'로 의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인터넷에 올린 가짜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한 다음 시세보다 비싼 값에 중고차를 팔아넘긴 혐의(사기,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로 중고차 판매업체 3곳과 관련자 98명을 적발, 대표 A(25)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할부금융을 중개하는 조직폭력배 B씨 등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달아난 2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중고차 매매단지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인터넷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허위·미끼매물을 올려 전국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인터넷 매물광고를 보고 중고차 단지에 찾아오면 인터넷에 올린 매물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며 먼저 계약을 체결한 뒤, 갑자기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속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와 팀장, 차량딜러, 할부금융중개인 등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른바 '뜯플(뜯고 플레이)'이나 '쌍플(쌍 플레이)'로 알려진 이러한 허위매물 판매수법으로 이들은 11억 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오전부터 밤 10시까지 딜러들에게 끌려다니다가 2014년식 중고 SUV를 시세보다 1,300만원 비싼 2,800만원에 구입한 경우 △딜러가 강권해 2008년식 LPG 승합차를 시세보다 두 배 비싼 가격에

구입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시동이 2번이나 꺼지고 3개월만에 폐차한 경우 △2011년식 승용차를 시세보다 1,400만원이나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면서 3개월후 년식이 좋은 차로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딜러가 잠적한 경우 등이 접수됐다.

인천은 국내 최대의 중고차 매매단지인 ‘엠파크’가 있는 등 중고차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중 하나다. 동시에 허위매물 판매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 차량 구매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사건이 접수돼 몇몇 중고차 판매상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결국 허위매물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성행하자 검찰은 이들을 ‘범죄단체’로 의율해 엄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민(49·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사기판매 조직을 엄벌해 중고차 거래질서를 안정시키고,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수많은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선량한 중고차 판매 종사원에게 손해를 가하며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고차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5/1 시행법령] 꼼짝 마,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고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됩니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전염병이 발생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가축전염병 우려 가축, 시설 출입차량,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8.5.1.] [법률 제14977호, 2017.10.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정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차량 등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포,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해당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이동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29 시행법령] 다 함께 일해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110호, 2017.11.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도모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6조제2항 신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 고용률 제고(제24조제2항 신설)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5/29 시행법령] 신입사원 워라밸을 구하라!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규입사자에게 2년간 최대 26일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108호, 2017.11.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0 시행법령]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안한 의무기관 과태료 300만원 부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를 불이행한 의무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8.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신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명 게임회사의 프로그래머로 2010년부터 일을 시작한 김프로씨! 처음에는 게임 프로그래머로서의 일이 즐거웠으나, 잦은 야근과 업무 실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결국 김프로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5년 1월부터 2년간 장기요양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다만 회사는 김프로씨가 어차피 장기요양 상태라 휴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1년 내내 일을 쉰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김프로씨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프로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는데요, 과연 김프로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요양기간동안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솔몬 : 당연히 불가능하지! 아무리 업무상 재해라고 하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 연차휴가는 열심히 일을 한 근로자에게 반대급부로서 휴식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그로 인해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거야.
2. 로몬 : 왜 불가능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보다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근로자가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함부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있는 거야. 김프로씨는 업무상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양을 하게 된 거라구. 그렇다면 김프로씨가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청구할 수 있었을 연차휴가수당도 받는 게 마땅한거 아냐?

☞ 정답은 2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80% 이상의 출근요건이 충족되면 연차는 반드시 주어져야만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나아가 연차의 산정에 있어서, 실제 출근하여 현업에 종사한 일자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현업에 출근하지 못한 사람간에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김프로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었던 2년의 기간은 모두 출근기간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유급휴가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운영 또는 생산에 기여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간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은 사용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이지, 생산 기여에 대한 포상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아울러 사용되지 않은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이므로,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주지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즉, 김프로씨의 경우 2015년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2014년에 80%의 출근율을 충족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2016년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2015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전체가 모두 출근기간에 산입되므로, 2015년과 2016년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